

2020년 6월 26일
(2021년 4월 16일 갱신)
출입국재류관리청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 (2021년 4월 16일 이후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'재입국 허가' 또는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다시 입국(※1)하실 수 있으니 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- ①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,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경우
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장 1년간입니다.

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새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여 주십시오. 연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②의 방법으로 입국하여 주십시오.

- ②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(①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.)

'재입국 허가' 또는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(※2)로부터 **6개월 이내의 기간 또는 그 시점부터 당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(※3)**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.(※4)

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또는 그 시점부터 당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'정주자' 사증(비자)을 신청하여 주십시오.
사증(비자)을 발급받으면 입국할 때 일본 공항에서 '영주자'로서 새로 입국하기 위한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.

※1 본 조치의 대상인 분이더라도 체재 중인 국가·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해제되지 않으면 --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--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.

※2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이란 체재 중인 국가·지역에 대한 상륙 거부 및 이미 발급된 사증(비자)의 효력 정지 둘 다 해제된 날을 가리킵니다.

각 국가·지역의 입국 제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.

<http://www.moj.go.jp/isa/content/930005848.pdf>

※3 '당청이 별도 지정하는 날'은 대략 3개월 전까지 당청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합니다.

※4 대상이 되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 관해서는 [여기](#)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도, 당청이 별도 지정하는 날까지는 입국 가능합니다. (2021년 4월 16일에 대상이 되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.)

※5 ① 및 ②의 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

https://www.mofa.go.jp/about/emb_cons/over/multi.html

※6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분이 본 조치를 이용하지 않고,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또는 그 시점부터 당청이 별도 지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'영주자' 이외의 재류자격에 의해 일본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영주자 허가 신청을 해 주시면 영주 허가 신청서, 제기서([별첨 참고 양식 1](#)), 종전의 재류카드 사본(복사본)으

로 심사를 합니다(필요에 따라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).
입국 후 6 개월을 초과해서 영주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의
영주 허가 신청과 마찬가지로 입증 서류가 필요해지므로 유의해 주십시
오.

영주 허가를 받음으로써 중장기 재류자로 되는 분은 영주 허가 후에 거
주하시는 시구정촌에 주거지 신고를 해 주십시오.